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28
----------	----

2019년 2월 26일
도시안전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18년 8월 16일, 서울특별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18년 8월 21일

다. 상정일자 : 제283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

(2018년 9월 4일 상정, 보류)

제285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

(2019년 2월 26일 상정, 수정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김학진 안전총괄실장)

가. 제안이유

서울시내 공사장 및 시설물에 대한 상시순찰 등 안전단속업무를 수행하는 안전어사대(단속반)를 운영하게 됨에 따라 안전단속 전반에 대한 전문분야별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민간전문가를 대폭 확충할 필요성이 있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(1) 서울특별시 안전관리자문단의 민간전문가인력을 대폭 확충(60명

→ 200명)하여 시설물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문제를 해소하고
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함(안 제31조)

(2) 자문단을 위원회로 오인할 수 있는 용어(위원 등) 및 ‘알기 쉬운
법령 정비기준’에 따른 용어 정비(안 제31조 및 제33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참조

다. 기타

(1) 입법예고 (2018. 6. 7. ~ 6. 27.) 결과: 의견 없음

(2) 신·구조문대비표: 별도 붙임

(3) 비용추계서: 별도 붙임

4. 검토보고요지 (수석전문위원 이상근)

- 본 개정안은 서울시내 공사장 및 시설물에 대한 상시순찰 등 안전단속업무 수행을 위한 안전어사대(단속반)를 운영하고자 활용 가능한 민간전문가의 충분한 확보를 위해 안전관리자문단원의 숫자를 확대(60명→200명)하는 한편, ‘위원’이라는 명칭이 합의기구로 오인할 소지가 있어 ‘단원’으로 변경하려는 것임.

[표] 개정안 주요골자

현 행	개 정 안
제31조(서울시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·구성) ② 자문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<u>자</u> 로 한다.	제31조(서울시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·구성) ② _____ ----- 20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, <u>자문단원</u> 은 _____ _____ <u>사람</u> 으로 _____.

- 현행 조례는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에 대해 안전총괄본부 소속으로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씩(위원 중 호선)을 포함하여 총 60명 이내의 건축·토목·전기·가스·기계 및 소방 등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[표] 안전관리자문단 분야별 위원 구성 현황

계	건축	토목	전기	기계	가스	소방	방재	건설안전	통신	철도
60	17	14	8	5	5	2	2	3	2	2

- 이들 안전관리자문단의 역할은 해빙기·우기 점검, 겨울철 안전취약시설 점검 그리고 행락시설·기계식주차장·옥상대형광고물·초고층건축물 등 각종 도시안전분야 점검 및 자문 등에 해당함.([표] 참조)

[표] 최근 3년간 안전관리자문단 점검실적

구 분	기 간	점 검 대 상	점 검 실 적(시정조치)	
‘16 년	설 날 대 비	1~2월(10일간)	전통시장, 여객자동차터미널 등	전기, 기계, 가스 등 138건
	해 병 기	2~3월(20일간)	굴토공사장, 축대, 옹벽 등	토질, 건축 등 49건
	봄 행 락 철	4월중(13일간)	유원시설, 어린이놀이시설 등	건축, 기계, 소방 등 38건
	우 기 대 비	7월중(5일간)	공사중 하천시설, 산림사면 등	토목, 건설안전 등 93건
	광 고 물 점 검	3~4월(8일간)	옥상대형광고물(특정관리대상)	건축, 전기 등 112건
	행 락 시설 점 검	5월중(7일간)	한강변 유선장, 전망카페 등	토목, 건축, 전기 등 244건
	지 하 보 도	8월중(10일간)	지하보도, 보도육교 등	토목, 구조, 전기 등 74건
	가 스 안전 관 리	8월중(10일간)	대형공사장 가스 등 안전관리실태 점검	기계, 가스분야 246건
	지 하 상 가	11월중(7일간)	지하도상가 및 지가주차장 점검	기계, 전기, 소방 등 154건
	안 전 취 약 시 설	12월중(10일간)	겨울철 안전사고 취약시설 안전점검	토목, 건축, 기계 등 225건
‘17 년	해 병 기	2~3월(7일간)	굴토공사장, 축대, 옹벽 등	토질, 건축, 전기 등 110건
	봄 행 락 철	3~4월(9일간)	공원시설, 어린이놀이시설 등	건축, 기계, 전기 등 228건
	다 중 이 용 시 설	4~5월(7일간)	유원시설, 수상시설, 둘레길 등	토목, 건축, 전기 등 42건
	여 름 철	6~7월(5일간)	수영장, 캠핑장, 야외물놀이장 등	건축, 기계, 전기 등 29건
	가 추 석 대 비	9월중(9일간)	전통시장, 터미널, 지하철역 등	건축, 전기, 소방, 가스 등 118건
	공 원 시 설 점 검	3월중(9일간)	생활권공원시설 안전점검 등	전기, 기계, 가스, 전기토목 등 228건
	옥 상 광 고 물	5~6월(11일간)	옥상대형광고물(특정관리대상)	건축구조, 전기 등 112건
	종 교 시 설 침 탐	8~9월(10일간)	종교시설 침탐 안전점검	건축구조, 전기 등 132건
	기 계 식 주 차 장	10~12월(15일간)	기계식 주차장 안전점검	건축구조, 전기, 기계 등 223건
‘18 년	지 진 안 전 대 비	‘17.11~‘18.2월(93일간)	민간건축물(피로티, 조적조)	현장안전관리 등 48건
	건 설 공 사 안 전	1~2월(15일간)	타워크레인 점검	현장안전관리, 기계분야 등 72건
	설 명 절 안 전 점 검	1~2월(8일간)	다중이용시설(전통시장, 여객터미널 등)	소방, 가스, 전기분야 등 242건
	화 재 취 약 시 설	2~3월(3일간)	소규모 숙박시설(모텔등)점검	소방, 가스, 전기분야 등 76건
	건 설 공 사 안 전 점 검	4~5월(15일간)	이동식크레인 점검	현장안전관리 등 132건
	초 고 층 건 축 물	4~5월(3일간)	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점검	재난예방 계획수립 등 229건
	LP 가 스 점 검	5~6월(12일간)	LP가스 사용취약시설 점검	가스분야 66건
	캠 핑 장 점 검	5~6월(12일간)	여름 휴가철 캠핑장 시설안전점검	소방, 전기분야 등 61건

- 서울시는 금년 1월 ‘안전문화 정착 혁신대책 추진방안(행정2부 시장 방침 제11호, 2018. 1.29)’의 일환으로 공사장 및 시설물 현장 안전수칙 미준수 재난취약 현장에 대해 그동안의 권고 위주 소극적 점검에서 단속 위주의 적극적 점검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임.
- 이를 위해 서울시는 “안전어사대”라는 명칭의 단속반 구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, 이를 위해 내부공무원(시설안전과 직원)인 ‘어사’와 전문자격증 소지자 및 안전 분야 경험자인 ‘어사대원’, 그리고 안전관리자문단의 ‘전문가’들로 안전어사대를 운영할 방침임.

※ 서울시 안전어사대 구성(안)

- 어 사 : 특사경으로 지정된 내부 공무원(시설안전과 직원)으로 구성
 - 역할 : 공사장 및 시설물 현장 어사대원 단속 지휘·조정
- 어사대원: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(마급)으로 구성 ※60명 채용('18년: 20명 '19년: 40명)
 - ※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안전 분야 유경험자(토목, 건축, 방재 등 퇴직공무원 포함)
 - 역할 : 공사장 및 시설물 현장에 대해 상시순찰을 통한 안전단속업무 수행
- 전문가 : 민간현장 전문가 200명 POOL 구성('18년: 100명, '19년: 100명)
 - ※ 건설안전, 토목, 건축, 기계, 전기, 가스, 방재 등 분야별 외부전문가
 - 역할 : 안전단속 전반에 대한 각 전문분야별 자문

- 이처럼 안전어사대가 구성되면 서울시 전역을 5개 권역(도심, 동북, 동남, 서북, 서남)으로 나누어 1일 5개팀(팀별 4~6명)이 토목, 건축, 방재 등 관련분야를 단속하게 됨.
- 이를 위해 본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문단을 200명 수준의 인력풀(pool)로 확대·구성하고 점검 대상에 따라 해당 관련분야 전문가 투입을 원활히 하겠다는 것이 본 개정안의

취지임.

- 이는 현행 조례가 정한 60명으로는 관련 전문가의 개인일정 등의 사유로 인해 원활한 투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200명 이내의 인력풀로 확대하려는 것으로,
- 「재난 및 안전관리법」 제75조제2항¹⁾은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법적 제약은 없으며,
- 또한, 서울시가 안전어사대를 운영함에 있어 적재적소에 관련 전문가를 신속히 투입하기 위해서라도 충분한 인력풀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바, 적절한 조치라 여겨짐.
- 다만, 현행 조례가 안전관리자문단 규모를 60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고 이를 200명으로 확대하는 본 조례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,
- 서울시가 ‘서울시 안전어사대 추진계획(시설안전과-4254, ‘18.3.21.)’이라는 방침에 의거 민간현장 전문가 즉, 안전관리자문단 인력풀²⁾ 200명(‘18년:100명, ’19년:100명)을 확보하기 위한 선정위원회를 2018.6.20.일 이미 개최한 것으로 파악되는바, 이처럼 관련조례 개정 없이 향후 개정을 전제로 행정을 집행하는 것은 의회의 의결권이 침해받을 소지가 있는 만큼 지

1) 제75조(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·운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2) [안전어사대 구성인력]

전문가 : 민간현장 전문가 200명 POOL 구성(‘18년 : 100명, ’19년 : 100명)

※ 건설안전, 토목, 건축, 기계, 전기, 가스, 방재 등 분야별 외부전문가

- 역할 : 안전단속 전반에 대한 각 전문분야별 자문

양되어야 할 것임.

- 한편, 본 개정안은 ‘자문단’을 합의체인 ‘위원회’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는 판단 하에 현행 ‘위원’을 ‘자문단원’으로 수정하고 있는데, 이는 자문단의 법적 지위와 성격을 보다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치라 여겨지며,
- 다만, 안 제31조제4항 및 제33조에도 ‘위원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본 개정안은 이를 간과하고 있어 이 역시 ‘자문단원’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.([표]참조)

[표] 수정안 조문대비표

개정안	수정안
제31조(서울특별시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·구성) ①~③ (생략) ④ 단장 및 부단장은 <u>위원</u> 중에서 호선한다	제31조(서울특별시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·구성) ①~③ (개정안과 같음) ④ 단장 및 부단장은 <u>자문단원</u> 중에서 호선한다
제33조(<u>자문단</u> <u>위원의 임기</u>) 자문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시장이 자문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.	제33조(<u>자문단원의 임기</u>) (개정안과 같음)

5. 질의 및 답변 요지 :

질의) 안 제31조제2항에 성별을 고려하여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데, 자격요건을 갖춘 여성 전문가를 확보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.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?(정진술 위원)

답변) 현재로서는 여성 전문가를 현장 점검 및 단속 등에 활용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없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,

정책 결정에 있어서는 여성 전문가를 활용이 가능할 것이
라 사료됨.(김학진 안전총괄실장)

질의) 안전관리자문단은 항시 활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필요시 활
용되는 것인지?(홍성룡 위원)

답변) 모든 안전점검 또는 진단에 안전관리자문단이 동원되는 것
이 아니라 전문적인 식견 또는 판단이 필요한 경우 안전관
리자문단 중 선별된 인력이 동행하는 형태로 운영될 예정
임.(김학진 안전총괄실장)

6. 토론요지 : 없 음

7.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: 해당 없음

8. 수정안의 요지 : 해당 없음

9. 심사결과 : 수정가결(재석의원 전원 찬성)

10. 소수의견의 요지 : 해당 없음

11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8
----------	----------

제안일자 : 2019년 2월 26일

제안자 : 도시안전건설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본 개정안은 ‘자문단’을 합의체인 ‘위원회’로 오인할 소지가 있어 ‘위원’을 ‘자문단원’으로 수정하고 있는데, 안 제31조제4항 및 제33조 제목에서도 ‘위원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이 역시 ‘자문단원’으로 수정하고,
-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의 현실성 등을 감안하여 자문단을 구성함에 있어 별도로 성별을 고려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수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함에 있어 성별 구분 없이 200명 이내로 함(안 제31조제2호).
- “위원”을 “자문단원”으로 수정함(안 제31조제4호).
- 안 제33조 제목을 “자문단원의 임기”로 함(안 제33조).

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”를 “이내로 구성하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위원”을 “자문단원”으로 한다.

안 제33조의 제목 “(자문단 위원 임기)”를 “(자문단원 임기)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31조(서울특별시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·구성) ① (생략)</p> <p>② 자문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<u>60명 이내의 위원</u>으로 구성하되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<u>자로</u> 한다.</p> <p>1. 건축·토목·전기·가스·기계 및 소방 등 관련분야 대학교수와 기술사,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(이하 "전문가"라 한다)</p> <p>2. (생략)</p> <p>3.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<u>자</u></p> <p>③ (생략)</p> <p>④ 단장 및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p>	<p>제31조(서울특별시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·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<u>200</u> <u>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, 자문단</u> <u>원</u>----- ----- ----- ----- <u>사람으로</u> --.</p> <p>1. ----- ----- ----- ----- <u>사</u> <u>람</u>-----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----- <u>사람</u>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단장 및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p>	<p>제31조(서울특별시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·구성) ①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<u>이내로 구성하되,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~3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③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④ ----- <u>자</u> <u>문단원</u> -----.</p>
<p>제33조(자문단 위원의 임기) <u>단장·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</u>는 2년으로</p>	<p>제33조(자문단 위원의 임기) <u>자문단원</u>----- -----</p>	<p>제33조(자문단원의 임기) (개정안과 같음)</p>

하되 연임할 수 있다.
다만, 다음 각 호의 어
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
우에는 임기 만료전이
라도 시장은 위원을 해
촉할 수 있으며, 보궐위
원의 임기는 전임자의
남은 임기로 한다.

1. 품위손상, 장기불참
등 위원의 직무를 수
행하는 데 부적합하
다고 인정되는 경우
2. (생략)

-----.

----- 만료 전이
라도 시장이 자문단원-
----- 있다.

1. -----
자문단원-----

2. 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”을 “200명 이내로 구성하되, 자문단원”으로, “자로”를 “사람으로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“자”를 “사람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위원”을 “자문단원”으로 한다.

제33조의 제목 “(자문단 위원의 임기)”를 “(자문단원의 임기)”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단장·부단장 및 위원”을 “자문단원”으로 하며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만료전이라도 시장은 위원”을 “만료 전이라도 시장이 자문단원”으로, “있으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”를 “있다.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위원”을 “자문단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1조(서울특별시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·구성) ① (생략)</p> <p>② 자문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<u>60명 이내의 위원</u>으로 구성하되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<u>자로</u>한다.</p> <p>1. 건축·토목·전기·가스·기계 및 소방 등 관련분야 대학교수와 기술사,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<u>자</u>(이하 "전문가"라 한다)</p> <p>2. (생략)</p> <p>3.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<u>자</u></p> <p>③ (생략)</p> <p>④ 단장 및 부단장은 <u>위원</u> 중에서 호선한다.</p> <p>제33조(<u>자문단</u> <u>위원의 임기</u>) 단장·부단장 및 <u>위원의 임기</u>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<u>만료전이라도</u> 시장은 <u>위원</u>을 해촉할 수 있으며, 보궐</p>	<p>제31조(서울특별시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·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<u>200명 이내로 구성</u> <u>하되, 자문단원</u>----- ----- ----- <u>사람으로</u> ----- ---</p> <p>1. ----- ----- ----- ----- <u>사람</u>----- -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----- <u>사람</u>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<u>자문단원</u> ----- ----- -----</p> <p>제33조(<u>자문단원</u>의 임기) <u>자문단원</u> ----- ----- ----- -- <u>만료 전이라도</u> 시장이 <u>자문단원</u>----- <u>있다.</u></p>

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1. 품위손상,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2. (생략)

1. ----- 자문단원-----

2. (현행과 같음)